

# 무연분묘 일제 정비사업 안내

## □ 개 요

### ① 정비대상

- 경작자 및 임야에 산재되어 있는 무연분묘 중 토지소유주 등이 개장을 원하는 경우
-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분묘
-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토지에 설치하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분묘

#### 무연분묘 판단기준

- 분묘 상태가 최소 10년 이상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된 경우
- 분묘가 산담 또는 비석이 없고 봉분 형태가 허물어지거나 잡목이 우거진 상태로 오랫동안(10년이상) 관리되지 않는 경우
- \* 분묘 연고자가 요양,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한 5~6년간 묘소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소 10년 이상 관리가 안된 것으로 추정되는 분묘에 한해 판단
- \* 10년 이상 △해당 토지 경작 및 임대한 사용자 △지역 거주자 △인근 토지주 등 의견 수렴

- ▶ (제외대상) △공부상 지목이 묘로 등재된 분묘 △비석이 설치된 분묘 △전년도 개장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이장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분묘

### ② 신청권자

-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점유자가 신청 가능
- 토지 소유자가 공동 소유인 경우 각각의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필요

### ③ 신청·접수

- 기 간 : '22. 4. 1.(금)~5. 31.(화), 2개월
- 장 소 : 분묘 소재지 읍면동

#### 구 비 서 류

- △신청서(서식 비치) △최근 2개월 이내 분묘 사진 2매(근경, 원경) △분묘 위치도(지적도에 분묘 위치 표시) △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(서식 비치)
- △각서(서식 비치) △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△위임장(토지소유자 위임으로 관리자 등이 신청할 경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) △동의서(공동 소유 시 신청인 외 토지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)

## □ 정비 절차

구 분	기 간	주 요 내 용
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 (신청인)	4. 1.~5. 3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분묘 소재지 읍면동</li> </ul>
현지 확인 조사 및 공고 대상 분묘 확정 (읍면동·시)	6. 1.~7. 25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부확인 : 신청대상 분묘 여부 확인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</li> <li>• 현장확인 등 : 무연분묘 여부 확인 및 공고대상 분묘 결정</li> </ul>
분묘 개장 공고 (시)	8. 1.~10. 3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고방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간신문 : 2회(1, 2차 공고) (중앙지 및 지방지 각 1)</li> <li>- 도·시·읍면동 홈페이지</li> <li>- 읍면동 및 마을회관 게시판 등</li> </ul> </li> </ul>
분묘 개장 대상 안내문 설치 (신청인)	8. 1.~10. 3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치 : 해당 무연분묘에 설치 (안내문 설치 사진을 읍면동에 제출)</li> <li>▶ 안내문(안) 읍면동 비치</li> </ul>
분묘 관리 재확인 (읍면동)	10. 4.~10. 25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별초 등 분묘 관리 여부 및 안내문 설치 여부 확인</li> </ul>
개장 대상 분묘 확정 후 개장허가증 교부 (읍면동→신청인)	11. 4.~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고 기간 중 이의 신청이 없고, 연고자 및 관리자가 없을 시 개장 허가 대상 분묘 확정, 개장허가증 교부</li> </ul>
개장 및 정비 (신청인)	개장허가증 수령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개장허가 : 허가증 교부 받은 후 개장</li> <li>• 유골처리 : 화장 후 봉안시설에 10년간 안치(양지공원 또는 읍면 봉안시설)</li> <li>▶ 일체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, 처리</li> <li>• 분묘 개장 후 종전의 매장지는 매물, 정리</li> <li>▶ 개장 후 전중후 사진 및 봉안증명서는 읍면동에 반드시 제출</li> </ul>

## □ 협조 사항

-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, 선진 장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홍보 바랍니다.